

● 제32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2023. 9.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216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3. 8. 14.
- 다. 회부일 : 2023. 8.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등
 - 운영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 ▶ 서울여성플라자 : 지하 3층, 지하 5층(연면적 22,520㎡)
 - ▶ 스페이스 살림 : 지상 7층, 지하 2층(연면적 14,710㎡)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살림

- 근거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주요사업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관리 등
- 3) '24년 소요예산(안) : 22,772,852천원
- 4) '24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 업 비 : 10,994,782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11,778,070천원
- 5)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의 경력 활성화, 아동의 권리 보장, 그리고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이하 “여성가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로서 여성가족재단의 출연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이에 따라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존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대상이 되고 예산 심의에 앞선 예산편성 단계에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된 것으로 2016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임.
- 또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4)에 따라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주요 내용과 이사회 회의록, 결산보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제출되었음.

2 여성가족재단 설립 개요 및 운영 현황

-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통해 양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며, 주요 사업으로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사업 및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등이 있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1. 출자·출연 사무명 |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6. 이사회 회의록 |
| 7. 결산 보고서 |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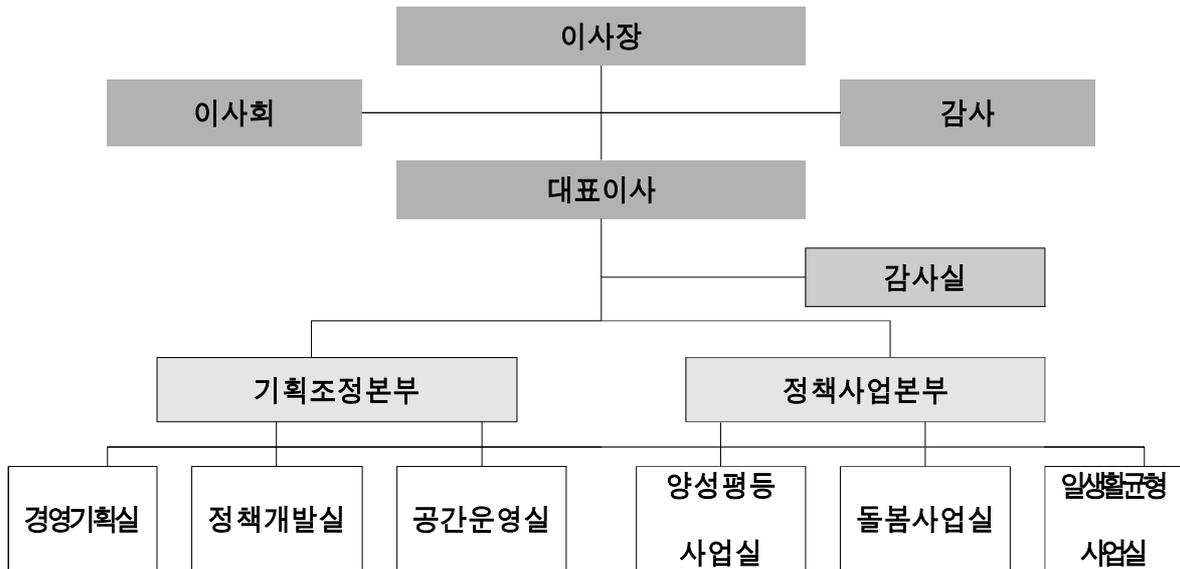
5.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6.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7.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2023년 8월 현재 여성가족재단의 운영 미션과 비전, 조직 및 인력, 주요 시설 현황, 예산 현황,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음.

<여성가족재단의 미션과 비전>

추진방향				
미션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 실현				
비전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				
시민생활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개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및 폭력대응체계 운영 활성화	서울 아이 돌봄 기관 인프라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속 가능한 일·생활 기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미래지향적 가치 기반의 책임경영 강화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정책 로드맵 개발 ○현장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	○서울형 성주류 화제도 통합운영 및 인프라 지원 강화 ○피해시민 관점 폭력대응 콘텐츠 개발 및 통합 지원 강화	○서울시 공보육 추진 지원 강화 ○서울시 아이돌봄 추진기반 확대 및 운영 지원 강화	○일·생활 균형 환경 및 문화 조성 지원 ○현장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	○지속가능경영 인프라 고도화 ○조직문화 개선과 이해관계자 협력 활성화 ○시민 수요 맞춤형 양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조직 현황 : 2본부, 7실>



<인력 현황>

(단위 : 명, 2023.8.31.기준)

구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정원	171	1	3	6	32	33	24	12	60
현원	169	1	2	4	26	26	39	11	60

- 여성가족재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 살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²⁾에 따라 관리위탁³⁾하여 그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 공간마련과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음.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을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업무형태임.

<운영시설 개요>

구분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 살림
위 치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동작구 노량진로 10(대방동)
규 모 (면 적)	지상 5층, 지하 3층 (연면적 22,520㎡)	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 14,710㎡) (경제정책실 분임관리공간 (3,247㎡) 제외)
건립기간	1999.11 ~ 2002.6	2017.12 ~ 2020.10
주요 시설	대관 공간	국제회의장, 아트홀 '봄', 시청각실, 아트컬리지 등
	사무 공간	여성가족재단 및 입주기관(단체) 사무실, NGO 활동공간, 성평등도서관 등
	편의 시설	아기쉼터, 휴라운지,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
공유재산 운영방식 (기간)	관리위탁 (2021.1.1. ~ 2025.12.31.)	관리위탁 (2020.6.1. ~ 2025.5.31.)

- 2023년 총예산은 319억원으로 2022년 251억원 대비 68억원 증가(27.1%)하였으며, 출연금은 2022년보다 14억원 증가(9.1%)한 169억원임.
- 출연금의 주요증액 사유는 기존에 서울시 수탁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22.10.17.)을 통해 고유사무화하여 증액편성(3억원)하고, 엄마아빠 vip존 설치 신규편성(2억2천만원), 서울여성플라자 시설 노후화(냉온수기, 냉각탑)등에 따른 비용 증액(6억1천만원), 난자동결지원사업비가 추가증액(3억2천만원)됨에 따른 것임.
- 또한 총예산 증액은 거점형키움센터등 수탁기관 운영외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우먼업)등의 수탁사업비 51억 6천만원이 증액된 결과임.

<2023년도 예산 내역>

- 수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증감(증감률)
계	25,080	31,887	6,807(27.1%)
출 연 금	15,465	16,870	1,405(9.1%)
자 체 수 입	5,084	10,640	5,556(109.3%)
사업운영수입	243	64	△179(△73.7%)
시설운영수입	1,260	970	△290(△23.0%)
기 타 수 입	825	862	37(4.5%)
이월 잉여금	812	1,484	672(82.8%)
대행사업수입	1,944	7,260	5,316(273.5%)
수탁기관 운영비	4,531	4,377	△154(△3.4%)
거점형 키움센터(1호)	1,439	1,427	△12(△0.8%)
거점형 키움센터(2호)	1,125	1,187	62(5.5%)
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1,967	1,763	△204(△10.4%)

- 지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증감율)	비고
계	25,080	31,887	6,807 (27.1%)	
사업예산	8,574	15,153	6,579 (76.7%)	· 시민생활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 개발 · 양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및 폭력 대응체계 운영 활성화 · 서울아이 돌봄기관 인프라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지속가능한 일·생활 기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미래지향적 가치 기반의 책임 경영 강화
일반관리비	11,975	12,357	382 (3.2%)	·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기본경비 · 예비비 · 반환금
수탁기관	4,531	4,377	△154 (△3.4%)	· 시립 제1·2호 거점형 키움센터 ·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 현행 성과지표가 예년과 동일하지 않아 이전 연도와의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다 할 것이나, 2023년 8월말 기준 이미 일부는 목표를 초과했으며, 나머지도 연말까지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성과지표>

주요 성과지표

단위목표	지표	목표	실적 (23.7.31. 기준)
시민생활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개발	정책 개발 및 성과관리	35건	7건
	정책활용도 제고	470.9%	하반기 집계예정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및 폭력 대응체계 운영 활성화	폭력예방 콘텐츠 개발	3건	2건
	성주류화 정책 개선율	47.7%	49.9%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 상담	7,000건	9,417건
서울아이 돌봄기관 인프라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35건	29건
	보육교직원 및 돌봄 종사자 교육	6,493명	6,392명
	컨설팅 및 상담	2,114건	887건
	연계협력 참여기관	59개	46개
지속가능한 일생활 기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일·생활균형 컨설팅 이행율	57.0%	하반기 집계예정
	일·생활균형 컨설팅 및 일자리 연계 참여기업	170개	115개
	교육 및 사업 참여자 일자리 연계	130건	81건
	지속가능한 일·생활기반 구축 콘텐츠 개발	12개	10개
미래지향적 가치 기반의 책임경영 강화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1,500명	1,546명
	공간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80점	하반기 집계예정
	공간 이용 콘텐츠 개발	5건	진행 중

<최근 3년간 주요 운영 실적>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정책개발 및 성과 관리	26개	36개	36개
	정책활용도 제고	286.5%	392.3%	461.9%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	일·생활균형 컨설팅 기관수	55개	55개	60개
	시민참여 콘텐츠 개발	13건	14건	16건
	성인지 정책 개선 이행률	52.7%	55.7%	62.1%
	양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콘텐츠 개발	12건	11건	10건
서울형 안심 돌봄체계 구축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8개	16개	21개
	보육교직원 및 돌봄 종사자 교육	2,461명	2,323명	2,646명
	돌봄관련 컨설팅 및 상담	3,427건	5,009건	5,389건
	안심돌봄 체계 구축 연계협력 참여기관	21개	28개	48개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사업 목표 조정

3 출연에 대한 타당성, 적절성 검토

- 최근 5년 간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한 예산규모는 총 701억원으로, 한해 평균 129억원(2019년~2023년, 5년 평균)정도인 바, 재단의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출연금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6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연금 지급에 대한 효과성과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여성가족재단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비율	
	총사업비	출연금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
2019	13,111	8,901	67.9	25.1
2020	16,825	13,859	82.4	55.7
2021	22,044	15,030	68.2	8.4
2022	25,080	15,465	61.7	2.9
2023	31,887	16,870	52.9	9.1
총액	108,947	70,125	-	-
평균	20,122	12,873	64.0	-

-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⁴⁾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출연을 위한 법적요

4)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시는 재

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여성가족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고유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동 재단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며, 재단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 할 것임.
- 이런 점에서 보면, 여성가족재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성평등 전문기관으로,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연구와 관련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또 서울시의 여성 및 아동·가족·보육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로서의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성가족재단 출연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종합 검토 의견

- 여성가족재단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연구·개발,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운영 등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위탁운영이나 우먼업 인턴십 사업, 난자

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동결지원사업 등 서울시 시책사업을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스페이스살림 등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의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여성가족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바, 재단 출연금의 총 규모 및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하여는 2024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와 예산지원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